##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1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이연희・박지원・김정호

허 영 · 민형배 · 황 희

송재봉 • 이정문 • 이광희

한민수 · 박홍배 · 정성호

한준호 · 김남희 · 서미화

허종식 • 최민희 • 정준호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102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2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같은 항 각 호의행위를 한 자 또는 제6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② (생 략)	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③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		
	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		
	<u>위</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2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6의2.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65		
	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		
	원 등 근로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7	$\sim$	9	(생	략)
ι.		J.	( 0	コノ

③・④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